



지방양여금법 개정 해설

강 성 조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지방양여금담당

I. 서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이 2001년 12월 29일 공포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98년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양여금 대상사업중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양여금 재원을 확대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재원 확대는 그 동안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국고에서 신규재원 출연확대의 소홀, 양여금사업내에서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로정비사업 재원의 축소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개정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수 없이 제기는 되었지만 자치구의 업무영역, 지방세체계 등으로 인하여 다소

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구에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의 일부가 지원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금번의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개정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써 지방양여금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주요개정내용

1.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양여금재원을 확대한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4대강 주요지점 수질개선 목표>

		수질현황	개선목표수
한강대책 (‘98)	팔 당	Ⅱ등급 BOD1.4mg/ℓ(‘97)	→ I 등급 BOD1.0mg/ℓ이하
낙동강대책 (‘99)	물 금	Ⅱ등급 BOD2.7mg/ℓ(‘98)	→ Ⅱ등급 BOD3.0mg/ℓ이하
금강대책 (2000)	대청호	Ⅲ등급 COD3.0mg/ℓ(‘99)	→ Ⅱ등급 COD3.0mg/ℓ이하
영산강대책 (2000)	나 주	Ⅳ등급 BOD6.5mg/ℓ(‘99)	→ Ⅱ등급 BOD3.0mg/ℓ이하

<2005년까지 수질오염방지사업별 총 투자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내 역	사 업 비	비 고
계			175,489	
환경 기초 시설	하 수 처 리 장	320개소	103,494	마을 571, 고도 184개 포함
	하수관거 정비	20,226km	50,502	
	분 노 처 리 장	개·보수 82개소	2,123	
	축산공공처리장	신설 18, 증설3개소	1,826	
	산업단지처리장	신설 29, 증설 3개소	3,763	
기타 사업	오염하천정화	60개	3,300	
	녹 조 방 지	322개	1,993	수초대조성, 하천자연정화 포함
	원 리 금 상 환		8,488	하수처리장 및 관거정비용자금 상환

※ 산업단지처리장, 녹조방지사업은 양여금사업이 아님

<법 개정에 따른 사업별 재원변동내역>

사 업 별	현 행	개 정	증 감
도 로 정 비	·교통세 전액 ·주세양여재원 147/1,000 ·농특세재원 6/10	·교통세 전액 ·주세양여재원 81/1,000 ·농특세재원 5/10 ₁	·주세 66/1,000 감
농어촌지역개발	·주세양여재원 141/1,000	좌 동	
수 질 오염 방지	·주세양여재원 400/1,000 ·농특세재원 4/10	·주세양여재원 466/1,000 ·농특세재원 5/10	·주 세 66/1,000 증 ·농특세 4/150 증
청 소 년 육 성	·주세양여재원 12/1,000	좌 동	
지 역 개 발	·주세양여재원 300/1,000	좌 동	

※ 도로정비사업에서 농특세가 6/10에서 5/10로 조정은 비율만 조정된 것이고 금액면에서는 변화가 없음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종합대책('96~2011)에 따라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4대강 수계별 수질을 2005년까지 II~IV등급에서 I~II등급으로 향상시키고 하수도 보급율을 80%까지 제고하기('98년 65.9%)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신규로 확충한 재원과 기존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중에서 일정비율을 조정한 재원으로 조달하였다. 즉, 신규재원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기반확충에 필요한 농어촌하수도정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기존의 150분

의 19에서 150분의 23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사업간 재원조정은 현행 양여금사업인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주세양여재원중에서 1천분의 66을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여 배분되도록 조정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양여금의 재원)	지방양여금(이하 “양여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 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금액(농어촌특별세액의 15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농특세전입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양여금의 재원)	-----	-----
제4조(양여금의 대상사업)	①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청소년육성사업 : 청소년육성법등 청소년육성관계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5. (생략) ② (생략)	제4조(양여금의 대상사업) ①	-----	-----
제5조(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	①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의 재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도로정비사업 : 교통세양여재원전액과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생략) 3. 수질오염방지사업 :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4. · 5. (생략) ② (생략)	제5조(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 ①	-----	-----
		1.	-----	-----
			-----1,000분의 81-----	-----
			-----10분의 5-----	-----
			-----	-----
		2.	(현행과 같음)	
		3.	-----1,000	-----
			분의 466-----	-----
			10분의 5 -----	-----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광역시자치구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지원

그 동안 실제로 생활여건이 시·군의 면지역과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는 광

역시 자치구의 농업진흥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양여금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신설> 1의 2. (생략) 2. ~ 10. (생략)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③(생략) 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 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의 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 -----군의 면 구역과 광역시 자치구 (준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 지역----- -----. ②③(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면의 구역 및 준농어촌의 지역----- -----.



에 의거하여 지방양여금은 각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하여 농어촌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보완하여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31조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대상에 포함된 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도 지방양여금을 지원하기 위한 양여기준을 마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농어촌지역을 집중지

원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취지, 일 반시의 동일지역 및 군의 읍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군의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즉, 광역시의 자치구중에서 준농어촌지역이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치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치구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양여금을 양여토록 하였다. 2002년의 경우 전체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양여금의 양여기준) ①(생략) 1. (생략)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3. ~ 5.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6조(양여금의 양여기준)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배분된 금액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양여한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과 동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대하여는 면수에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이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치구를 말한다)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시·군·자치구에 양여한다. 이 경우 시·군에 대하여는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나.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 또는 군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 준농어촌지역이 자치구 면적의 50% 이상인 자치구

(단위 : 개)

구 분	대 상 자 치 구
계	15
부 산	강서구, 금정구, 해운대구(3)
대 구	북구, 수성구, 동구(3)
인 천	계양구(1)
광 주	남구, 동구, 광산구(3)
대 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3)
울 산	중구, 북구(2)

<자치구를 면과 같이 보는 근거>

광역시의 총 44개 자치구중에서 준농어촌 지역이 있는 자치구는 30개로서 30개 자치구의 준농어촌 지역의 규모는 광주 광산구 13,959ha(인구 13,446명), 부산 강서구 12,058ha(인구 53,505명)이며, 제일 작은 인천 남구는 12ha(인구 없음)로서 다양하다.

따라서 도시화의 비율(면적비 50%이상)이 높은 자치구는 제외한(30개중 15개)자치구의 준농어촌 지역의 평균면적은 6,549ha(인구 9,351명)로서 면지역의 평균면적 6,469ha(인구 6,469명)와 비슷하다

III. 결

지방양여금 제도개선은 이제 출발점이다. 지방양여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불안정한 양여금 재원인 주세 등을 안정적인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정비사업에 광역시 구도, 읍·면도시계획도로 등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사업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정보화, 지방소도읍육성 사업 등에 대한 양여금 지원도 요청된다.

한편, 양여금 재원의 포괄적 배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가 요청된다. 즉, 양여금을 양여한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에 감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양여금대상사업으로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양여금의 각종 제도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방양여금법령 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자원별 투자소요(2001 ~ 200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존대책	추 가 사 업				
			소 계	금 강	영산강	시화화옹	새만금
총 계	175,489	166,463	9,026	2,551	3,661	1,440	1,374
국 고	5,794	4,955	839	314	525	-	-
환특용자	9,189	9,189	-	-	-	-	-
양 여 금	92,505	86,790	5,715	1,566	2,179	1,008	962
지 방 비	59,660	57,188	2,472	671	957	432	412
공공용자	1,462	1,462	-	-	-	-	-
기 타	6,879	6,879	-	-	-	-	-

※·기존대책은 물관리종합대책('96), 한강('98) 및 낙동강('99) 대책임
·산업단지처리장(3,763억원), 녹조방지사업(1,993억원) 포함한 금액임